

研究報告書 96-06

1996年 患者調査  
改善方案 및 調査設計에 관한 研究

桂 勳 邦  
都 世 綠  
宋 建 鏞

韓國保健社會研究院



# 提 出 文

保健福祉部 長官 貴下

귀부로부터 의뢰받은 “1996年 患者調査 改善方案 및 調査設計에 관한 研究”가 완료되었기에 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1996. 8. 3.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延 河 清

## 研 究 陣

研究責任者：桂 勳 邦(調査統計研究室長)

研 究 員：都 世 緑(責任研究院)

宋 建 鏞(招聘研究院)

## 머 리 말

이 報告書는 保健福祉部의 用役研究로 이루어진 1996年度 患者調査 改善方案 및 調査設計에 관한 研究結果이다.

患者調査는 全國의 醫療機關을 대상으로 하는 2年 週期的 標本調査로서, 國民의 疾病樣相과 醫療機關 利用水準을 파악하기 위한 統計調査이며, 이 조사결과는 保健醫療 政策樹立을 위한 基礎資料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患者調査는 1988年度부터 2年 週期的 標本調査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우리 研究院은 조사때마다 標本設計와 調査票開發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였으며, 1996年度 調査에서도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改善方案 및 調査設計에 관한 研究를 실시하였다.

특히 1996年度 研究에서는 調査管理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保健所의 調査管理 業務量이 過多하지 않도록 標本을 設計하였으며, OECD에서 요구하는 醫療人力 및 病床數 등에 관한 公共部門 및 民間部門 統計와 性別 醫師數를 생산할 수 있도록 調査內容을 改善하였다. 또한 疾病에 관하여는 傷害(損傷·中毒)의 경우 그 形態와 原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研究陣은 本 報告書의 原稿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하여 준 本 研究院의 卞俗榮 博士와 韓英子 責任研究員, 그리고 原稿의 校訂과 編輯을 맡아 준 邵源哲 責任管理員에게도 感謝하고 있다. 또한 이 研究를 위한 財政的 支援과 많은 意見을 제시하여 주신 保健福祉部 電算統計擔當官과 關係者 여러분께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가 政府의 統計活動 改善努力에 도움이 되기를 바  
라며, 本 報告書에 수록된 모든 內容은 어디까지나 研究者의 意見일  
뿐 本 研究院의 公式 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6年 7月 日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延河清

## 目 次

要 約 .....	7
I. 序 論 .....	10
1. 患者調査 概要 .....	10
2. 研究의 目的 및 内容 .....	11
3. 研究의 基本方向 .....	12
II. 標 本 設 計 .....	13
1. 標本抽出對象 母集團 .....	13
2. 全數調査對象 醫療機關 種類의 選定 .....	13
3. 調査對象 醫院의 選定 .....	15
4. 其他 醫療機關에 대한 調査對象 機關의 選定 .....	21
5. 全國의 調査規模 .....	23
6. 調査對象 醫療機關名簿 .....	24
7. 調査對象 機關의 有故 및 新設機關에 대한 處理 .....	26
8. 推定方法 .....	29
III. 調査票 設計 .....	33
1. 考慮된 事項 .....	33
2. 改善内容 .....	33
IV. 調査票 作成 要領 .....	35

1. 一般的 注意事項 .....	35
2. 調査票 I (機關調査) .....	36
3. 調査票 II (外來患者) .....	41
4. 調査票 III (退院患者) .....	45
附 録 : 1. 區市郡別 調査規模 .....	53
2. 區市郡別 行政區域番號 .....	56
3. 區市郡別 調査規模 .....	60
4. 1996年度 調査票 (3種) .....	65

## 表 目 次

<表 1> 醫療機關 種類別 醫療機關數 .....	13
<表 2> 市道 및 全數調査對象 醫療機關 種類別 機關數 .....	14
<表 3> 診療科目 및 專門醫 資格科目 .....	16
<表 4> 主된 標榜科目 附與 結果의 醫院數 .....	20
<表 5> 標本調査對象 醫院의 選定內譯 .....	22
<表 6> 醫療機關 種類別 調査規模 .....	24
<表 7> 醫療機關의 層番號 .....	25



# 要 約

## 1. 研究目的

- 保健福祉部에서는 국민의 疾病·傷害 樣相과 醫療利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全國의 醫療機關을 대상으로 하는 標本調査인 患者調査를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음.
- 患者調査의 結果는 國家 保健醫療政策의 樹立, 執行 및 評價뿐만 아니라 保健醫療人力의 養成과 각종 保健醫療機關의 經營 및 保健行政從事者에게 重要な 資料가 되고 있음.
- 본 研究는 1996年 患者調査의 改善方案 및 調査設計에 관한 研究로서, 保健福祉部가 이 研究結果를 이용하여 1996年度 患者調査을 效率的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함.

## 2.. 考慮된 事項

- 본 研究와 관련하여 考慮된 事項은 다음과 같음.
  - ① OECD에서 요구하는 統計 중에서 患者調査를 통하여 생산할 수 있는 保健醫療部門 從事人力, 醫療人力에 관한 事項의 補完
  - ② 그동안 생산하지 못했던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의 관련 統計를 生産할 수 있도록 既存 項目의 修訂
  - ③ 각종 事故에 의한 傷害의 診療에 대하여 傷害의 形態, 傷害의 原因에 관한 統計를 작성하기 위한 項目의 追加
  - ④ 調査票 記入 및 入力의 便利性, 해당 의료기관에서 단순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單純性, 조사표 취급의 便利性

### 3. 改善內容

#### 가. 調査票

##### - 調査票 I (機關調査)

- ① 專門醫 修鍊病院에서만 醫師를 專門醫, 一般醫, 專功醫로 區分하여 調査하던 것을 모든 機關으로 擴大
- ② 病醫院 소속 종사자의 경우 性別 統計를 作成할 수 있도록 ‘男子’와 ‘女子’의 2개 項目을 追加
- ③ 病醫院 從事者數에는 委託業體 所屬 職員數(俸給은 委託業體에서 받고 病醫院에서 근무하고 있는 從事者數)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委託業體 소속 직원수도 파악토록 相關항목 추가
- ④ 12개 項目으로 되어 있던 設立區分을 6개 項目으로 縮小하고 公共部門(4개 項目)과 民間部門(2개 項目)으로 區分
- ⑤ 不必要한 項目인 開設日字를 削除

##### - 調査票 II (外來患者)

- ① 調査票 欄外 右側에 있는 記入要領 중에서 疾病名 記入要領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
- ② 疾病名이 傷害(損傷·中毒) 또는 그 後遺症과 關聯되는 경우에 傷害의 形態와 傷害의 原因에 관한 統計를 作成할 수 있도록 形態番號와 原因番號의 2個 項目을 追加

##### - 調査票 III (退院患者)

- ① 疾病名을 3개까지 記入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2개로 縮小
- ② 主 疾病名이 傷害(損傷·中毒) 또는 그 後遺症과 關聯되는 경우에 傷害의 形態와 原因에 관한 統計를 作成할 수 있도록 形態番號와 原因番號의 2個 項目을 追加

나. 標本設計

- 현지 調査管理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保健所의 調査管理 業務量이 過多하게 되지 않도록 標本을 設計
- 醫院의 경우 病床數, 醫師數 및 標榜科目 등을 層化指標로 사용하여 疾病構造 및 患者數 推定值의 標本誤差를 減少시키는 技法의 適用

4. 全國 標本規模

機關種類	機關數	標本機關數	抽出率
綜合病院	272	272	全數
病院	467	467	全數
齒科病院	15	15	全數
韓方病院	72	72	全數
保健醫療院	16	16	全數
保健所	225	225	全數
醫院	14,855	2,638	1 / 5.6
- 全數調査層	589	589	全數
- 標本調査層	14,296	2,049	1 / 7
齒科醫院	8,492	339	1 / 25
韓醫院	5,807	290	1 / 20
保健支所	1,304	131	1 / 10
保健診療所	2,037	204	1 / 10
助産所	176	176	全數
計	33,741	4,845	1 / 7

# I. 序 論

## 1. 患者調査 概要

### 가. 調査目的

患者調査는 全國의 醫療機關을 대상으로 일정 시점에서 醫療人力 現況 및 病床數 등에 관한 자료와 일정 期間 중에 醫療機關을 이용한 患者의 性 및 年齡과 傷病에 관한 資料를 수집하는 調査로서, 醫療機關 種類別 및 傷病別 患者數, 診療費 支拂方法, 醫療人 1人當 患者數, 受診率 등 國民의 疾病·傷害 양상을 파악하여 保健 및 醫療政策 樹立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調査이다.

따라서 患者調査의 結果는 國家의 保健醫療政策의 수립, 집행 및 평가뿐만 아니라 保健醫療人力의 양성과 각종 保健醫療機關의 경영 및 保健行政 從事者에게 중요한 자료가 된다.

### 나. 調査沿革

患者調査는 國民의 疾病·傷害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1968년부터 疾病·傷害統計調査라는 명칭의 統計調査로서 부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1986년부터는 2년 주기로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1988년에 患者調査라는 명칭으로 바꾸었다. 1986년까지는 全國의 모든 醫療機關을 대상으로 調査 基準日 현재의 각 醫療機關의 실태, 그 날의 外來 및 入院 患者의 疾病名과 1個月間 退院患者의 疾病名을 포함한 몇가지 基本項

目만을 全數調査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全數調査方法에 의한 調査는 調査對象 및 資料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調査에 투입되는 人的, 物的 資源의 제한으로 調査管理, 內容檢査, 資料處理에 어려운 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調査와 관련되는 전체적인 業務量을 적정 수준으로 경감시켜 調査管理, 調査票作成 및 資料處理를 철저히 할 수 있는 標本調査方法 開發의 必要性이 인식되어, 이에 대한 연구를 韓國保健社會研究院에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은 保健福祉部가 患者調査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標本設計와 調査票 開發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였고, 이 研究結果에 의하여 1988년 患者調査가 실시되었다.

1990년, 1992년 및 1994년 患者調査의 경우에도 標本設計 및 調査票設計를 韓國保健社會研究院에서 담당하였으며, 이 때마다 標本抽出方法과 調査票를 계속하여 改善시켜 왔다. 이러한 經驗을 토대로 1996년 患者調査의 改善方案 및 調査設計에 관한 연구도 韓國保健社會研究院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 2. 研究의 目的 및 內容

이 研究는 1996년 患者調査를 保健福祉部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標本設計와 調査票設計를 主 目的으로 하며, 이에 따른 研究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 ① OECD에서 要求하는 醫療人力 및 病床數에 관한 統計와 보다 活用度가 높은 統計를 생산할 수 있는 改善方案의 강구
- ② 현지 調査管理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保健所의 調査管理 業務量이 과다하지 않게 되는 標本の 設計

- ③ 調査票는 該當 醫療機關 從事者가 작성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누구나 調査票를 보면 기입 요령과 내용을 이해하고 착오없이 調査票를 작성할 수 있는 調査票의 設計

### 3. 研究의 基本方向

#### 가. 標本設計

1992년 및 1994년 경험에 의하면 市道別로는 標本規模가 근본적으로 작기때문에 標本誤差가 너무 커서 主된 疾病分類別 患者統計의 제공은 불가능하였다.

標本誤差를 감소시키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標本醫療機關數를 증가시키면 되지만, 1994년의 경험에 의하면 資料處理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報告書가 適期에 發刊되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6大都市 保健所의 경우 調査管理 業務量이 너무 過多하여 調査管理에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오히려 標本醫療機關數를 감소시켜야 할 실정이었다.

따라서 1996年度 研究에서는 調査管理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保健所의 調査管理 業務量이 過多하게 되지 않도록 전국의 標本 醫療機關은 5,000個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나. 調査票 設計

患者調査를 통하여 OECD에서 요구하는 統計를 生産할 수 있는 項目과 政策樹立에 필요한 統計를 生産할 수 있는 項目을 選定하여 추가한다.

그리고 조사표는 가급적 단순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설계한다.

## II. 標本設計

### 1. 標本抽出對象 母集團

1996년 6월 5일 현재 醫療保險管理公團의 療養取扱機關 電算과일에 수록된 醫療機關은 33,787個 機關이었다.

그런데 과거 경험에 의하면 廢業機關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同一 區市郡 내에서 機關名, 住所, 電話番號, 代表者名 등 4개 項目中에서 1개 項目만이라도 같은 경우를 전산출력하여 전화로 有故與否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37個 機關이 廢業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廢業으로 확인된 37個 機關을 제외한 33,741個 機關을 標本抽出對象 母集團으로 하였으며, 種類別 醫療機關數를 집계한 결과는 다음의 <表 1>과 같다.

<表 1> 醫療機關 種類別 醫療機關數

機關種類	機關數	機關種類	機關數	機關種類	機關數
① 綜合病院	272	⑤ 保健醫療院	16	⑨ 韓醫院	5,807
② 病院	467	⑥ 保健所	225	⑩ 保健支所	1,307
③ 齒科病院	15	⑦ 醫院	14,855	⑪ 保健診療所	2,037
④ 韓方病院	72	⑧ 齒科醫院	8,492	⑫ 助産所	176

### 2. 全數調査對象 醫療機關 種類의 選定

市道에 관계없이 ① 綜合病院, ② 病院, ③ 齒科病院, ④ 韓方病院, ⑤ 保健醫療院, ⑥ 保健所の 6개 종류에 속하는 醫療機關은 모두 全數

調査對象 機關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6개 종류의 총 1,067個 機關은 모두 다 調査한다. 이에 관한 市道別 내역은 <表 2>와 같다.

<表 2> 市道 및 全數調査對象 醫療機關 種類別 機關數

市道	綜合 病院	病院	齒科 病院	韓方 病院	保健 醫療院	保健所	計
서울	74	101	8	22	-	25	230
釜山	25	51	-	4	-	13	93
大邱	12	14	1	15	-	8	50
仁川	12	17	2	4	-	10	45
光州	8	17	2	4	-	4	35
大田	6	12	-	5	-	5	28
京畿	29	73	-	4	1	38	145
江原	17	20	-	2	2	16	57
忠北	10	13	-	1	-	12	36
忠南	11	21	1	2	1	14	50
全北	10	19	1	3	3	12	48
全南	16	27	-	1	4	20	68
慶北	16	24	-	5	3	21	69
慶南	21	58	-	-	2	23	104
濟州	5	-	-	-	-	4	9
計	272	467	15	72	16	225	1,067

이 6개 종류의 醫療機關을 全數調査하는 이유는 醫療機關 種類別로 推定値를 산출하여야 하는데, 이들 醫療機關은 그 數가 적을 뿐만 아니라 患者數가 많으면서도 機關別로 그 差異가 심하기 때문에 어느 한 機關이 標本으로 抽出되는 경우와 抽出되지 않는 경우에 따라 標本推定値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1992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全數調査象 機關은 전체 醫療機關數의 4%미만이지만 入院患者數와 外來患者數가 각각 81%와 18% 정도를 차지하는 患者數가 많은 醫療機關이다.



### 3. 調査對象 醫院의 選定

醫院의 경우에는 入院診療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標榜科目이 다양하고 標榜科目別 醫院數의 차이가 심하면서도 12個 醫療機關 種類 중에서 그 數가 가장 많으므로(14,855個 의원, 44%) 醫院部門에 대하여는 標本誤差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標榜科目, 病床數, 醫師數등을 고려하여 全數調査對象 醫院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음에 나머지 醫院중에서 標本調査對象 醫院을 選定하였다.

#### 가. 醫院에 대한 主된 標榜科目番號 附與

일반적으로 감기증세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眼科醫院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과 같이, 診療를 받기 위하여 醫院에 갈 때에는 標榜科目을 보고 해당 醫院을 찾아가게 마련이다.

따라서, 小兒科醫院의 경우와 眼科醫院의 경우에 診療를 받는 患者의 特性이 상당히 다른 것처럼, 醫院에서 診療를 받는 患者의 性, 年齡 및 疾病의 종류는 標榜科目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標榜科目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標本調査對象 醫院을 추출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연히도 어떤 標榜科目의 醫院은 전혀 抽出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다른 어떤 標榜科目의 醫院은 비교적 더 많이 抽出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疾病構造에 관한 統計의 正確性 確保를 전혀 보장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각 標榜科目別로 標本調査對象 醫院이 골고루 抽出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標本調査對象 醫院을 각 標榜科目別로 골고루 抽出하기 위해서는 醫院을 標榜科目에 따라 분류하고 각 標榜科目에서 골고루 抽出하면 되나, 실제로는 標榜科目數가 2개 이상인 醫院의 경우도 많으므로 主된 標榜科目 1個만을 택할 수밖에 없다.

醫療保險管理公團의療養取扱機關 電算과일에 수록된 診療科目과 專門醫의 資格科目에 의한 科目分類는 42個 科目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齒科醫院의 10個 科目과 韓醫院의 6個 科目을 제외한 26個 科目이 醫院과 관련되는 科目이 된다.

그런데, 標榜科目이 外部에 표시되는 醫院의 명칭에는 神經精神科, 皮膚泌尿器科와 같이 2個의 科目이 동시에 포함된 경우가 있으므로 神經精神科와 皮膚泌尿器科를 추가하여 <表 3>에서와 같이 일단 28個 科目을 설정하였다.

<表 3> 診療科目 및 專門醫 資格科目

番號	科目	番號	科目	番號	科目
01	內科	11	小兒科	21	再活醫學科
02	神經科	12	眼科	22	核醫學科
03	精神科	13	耳鼻咽喉科	23	家庭醫學科
04	一般外科	14	皮膚科	24	應急醫學科
05	整形外科	15	泌尿器科	25	産業醫學科
06	神經外科	16	診斷放射線科	26	豫防醫學科
07	胸部外科	17	治療放射線科		
08	成形外科	18	解剖病理科		< 追加 >
09	痲醉科	19	臨床病理科	27	神經精神科
10	産婦人科	20	結核科	28	皮膚泌尿器科

이 28個 科目 중에서 痲醉科, 治療放射線科, 解剖病理科, 核醫學科, 應急醫學科, 産業醫學科, 豫防醫學科는 醫院의 標榜科目으로는 부적당 하지만 專門醫 資格과 관련되는 科目이다.

14,855個 醫院에 대하여는 <表 3>의 科目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주된 標榜科目番號를 부여하였다.

① 第1段階：醫院의 名稱에 의한 診療科目番號 附與

醫院의 名稱에 診療科目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科目을 標

榜科目으로 하였으며, 28個 科目중 21個 科目의 10,590個 醫院에 대하여 標榜科目番號를 부여하였다.

② 第2段階：醫療保險管理公團의 標榜科目에 의한 分類番號 附與

醫院의 名稱으로 주된 標榜科目이 결정되지 않은 4,265個 醫院의 경우에는 電算과일 자체의 標榜科目(醫療保險管理公團에서 분류한 標榜科目)을 택하였으며, 第2段階에서는 18個 科目의 170個 醫院에 대하여 標榜科目番號를 부여하였다.

③ 第3段階：專門醫 資格科目에 의한 分類番號 附與

電算과일 자체의 標榜科目으로도 標榜科目이 분류되지 않는 4,095個 醫院의 경우에는 專門醫가 있으면 그 專門醫 資格科目에 따랐다.

이 때, 一般的인 科目이 아닌 痲醉科, 診斷放射線科, 治療放射線科, 解剖病理科, 核醫學科, 應急醫學科, 豫防醫學科인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科目에 專門醫가 있으면 그 專門醫 資格科目에 따랐으며, 그 科目이 痲醉科, 治療放射線科, 解剖病理科인 경우에는 그 다음 專門醫의 資格科目을 택하였다. 결과적으로 第3段階에서는 20個 科目의 1,700個 醫院에 대하여 標榜科目番號를 부여하였다.

④ 第4段階：診療科目에 의한 分類番號 附與

專門醫 資格科目에 의하여도 標榜科目이 분류되지 않는 2,395個 醫院의 경우에는 電算과일의 診療科目 중에서 첫 번째의 診療科目을 택하였다.

이 때, 일반적인 診療科目이 아닌 痲醉科, 治療放射線科, 解剖病理科의 경우에는 그 다음 번의 診療科目을 택하였다. 第4段階에서는 16個 科目의 2,286個 醫院에 대하여 標榜科目番號를 부여하였으며, 이 중에서 78%에 該當하는 1,786個 醫院이 內科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이 內科로 많이 분류된 이유는 內科의 診療科目番號가 01번

이기 때문이다. 즉, 診療科目이 小兒科와 內科인 의원의 경우를 보면 診療科目番號 01번이 內科이고 11번이 小兒科이므로, 이 중에서 內科의 診療科目番號 01번이 小兒科의 診療科目番號 11번보다 먼저이므로, 01번의 內科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⑤ 第5段階：代表者の 專門醫 資格科目에 의한 分類番號 附與

診療科目에 의하여도 標榜科目이 分類되지 않는 109個 醫院의 경우에는 代表者の 專門醫 資格科目을 택하였다. 第5段階에서는 7個 科目의 18個 醫院에 대하여 標榜科目番號를 부여하였다.

第5段階까지 14,855個 醫院 중에서 14,764個 醫院에 대한 標榜科目이 決定되었으며, 91個 醫院에 대하여는 標榜科目을 決定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14,855個 醫院에 대하여 標榜科目番號를 附與한 結果, 標榜科目別 醫院數는 <表 4>와 같다.

⑥ 確定段階：電話確認에 따른 標榜科目의 變更

우선 標榜科目이 결정되지 않은 91個 醫院은 家庭醫學科로 분류하였다(일부 醫院에 대한 電話確認 결과에 따름).

第5段階까지의 結果를 보면 痲醉科(32개 의원), 治療放射線科(1개 의원), 解剖病理科(17개 의원), 結核科(49개 의원), 臨床病理科(38개 의원)의 경우에는 많은 의원이 專門醫 資格과 관련하여 결정된 標榜科目이며, 이들 科目과 産業醫學科(20개 의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이 아닌 科目이 아니므로, 실제로는 다른 標榜科目의 醫院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醫院에 대하여는 모두 電話로 確認하여 사실상의 標榜科目으로 수정하였다.

이 중에는 産業體 職員의 綜合檢診을 주로 하는 醫院, 健康管理協會 附屬醫院, 結核協會 附屬醫院, 家族計劃協會 附屬醫院, 韓國醫學研究所 附屬醫院 등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 醫療機關은 特殊한 形態의 醫療機關이므로 지금까지

의 標榜科目과는 별도로 分類하고 그 數는 많지 않으므로 全數調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韓國癩管理協會·健康管理協會·結核協會·家族計劃協會·韓國醫學研究所 등의 附屬醫院은 特殊醫院으로 分類키로 하였다(韓國醫學研究所 附屬醫院은 綜合檢診이 주된 事業임). 이에 따라 다른 標榜科目의 醫院으로 分類되었던 이들 機關의 모든 附屬醫院은 特殊醫院으로 再分類하였다.

그리고 産業醫學科로 분류되었던 醫院중에서 다른 標榜科目으로 변경되지 않은 나머지의 醫院은 모두 檢診을 주로 하는 醫院이므로 特殊醫院으로 포함시켰다(特殊醫院의 標榜科目은 편의상 特殊科로 함).

결과적으로 다른 標榜科目으로 分類되었던 82個 醫院이 特殊醫院으로 분류되었다.

#### 나. 全數調查對象 醫院의 選定

醫院數가 적은 標榜科目의 醫院과 상대적으로 患者數가 많은 醫院을 全數調查對象 醫院으로 하면 疾病構造의 標本誤差가 감소되므로, 다음과 같은 醫院은 우선적으로 全數調查對象 醫院으로 選定하였다.

- 醫院數가 100개 미만인 標榜科目의 醫院 - 412개 의원
  - 精神科醫院 : 59개 의원
  - 胸部外科醫院 : 95개 의원
  - 麻酔科醫院 : 19개 의원
  - 臨床病理科醫院 : 59개 의원
  - 結核科醫院 : 38개 의원
  - 再活醫學科醫院 : 60개 의원
  - 特殊醫院 : 82개 의원
- 30病床 이상인 醫院 : 49개 의원
- 醫師(專門醫 포함)가 4명 이상인 醫院 : 128개 의원

〈表 4〉主된 標榜科目 附與 結果의 醫院數

科目	1段階	2段階	3段階	4段階	5段階	計	確定
內科	1,807	11	120	1,786	-	3,724	3,712
神經科	46	-	4	9	-	59	59
神經精神科	252	-	-	-	-	252	252
精神科	102	18	6	2	-	128	128
一般外科	878	48	489	82	1	1,498	1,498
整形外科	820	6	47	14	-	887	886
神經外科	200	3	12	1	-	216	217
胸部外科	11	2	83	-	-	96	95
成形外科	245	4	8	104	-	361	363
痲醉科	16	4	-	-	12	32	19
產婦人科	1,563	24	64	106	-	1,757	1,745
小兒科	1,591	17	32	49	1	1,690	1,692
眼科	609	3	5	44	-	661	661
耳鼻咽喉科	951	5	6	13	-	975	975
皮膚科	411	2	17	64	-	494	488
皮膚泌尿器	42	-	-	-	-	42	42
泌尿器科	449	7	16	1	-	473	473
診斷放射線	214	6	-	-	1	221	221
治療放射線	-	-	-	-	1	1	-
解剖病理科	2	-	15	-	-	17	-
臨床病理科	28	2	16	2	-	48	59
結核科	22	2	24	-	1	49	38
再活醫學科	48	-	11	1	-	60	60
核醫學科	-	-	-	-	-	-	-
家庭醫學科	263	6	725	8	1	1,003	1,090
應急醫學科	-	-	-	-	-	-	-
產業醫學科	20	-	-	-	-	20	-
豫防醫學科	-	-	-	-	-	-	-
特殊科	-	-	-	-	-	-	82
計	10,590	170	1,700	2,286	18	14,764	14,855
分類不能	4,265	4,095	2,395	109	91	91	-

결과적으로 589個 醫院이 全數調査對象 醫院으로 선정되었다. 이 때 皮膚泌尿器科(41개 의원)의 경우에도 醫院數가 100개 미만이므로 全數調査對象 醫院이 되어야 하지만, 全數調査對象 醫院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皮膚泌尿器科의 患者는 피부과와 비뇨기과 患者이며, 피부과의원과 비뇨기과의원이 全數調査對象 醫院이 아니므로 皮膚泌尿器科醫院만 全數調査對象 醫院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다. 標本調査對象 醫院의 選定

589個의 全數調査對象 醫院을 제외한 나머지의 14,266個 醫院 중에서는 標榜科目別로 醫院數에 따라 抽出間隔을 달리하여 市道 및 區市郡의 行政區域番號 순서로 系統抽出하였다. 결과적으로 17個 科目의 2,049個 醫院이 標本調査對象 醫院으로 選定되었다. 이에 관한 세부 내역은 <表 5>와 같다.

### 4. 其他 醫療機關에 대한 調査對象 機關의 選定

#### 가. 齒科醫院

8,492個 齒科醫院 중에서 1 / 25에 해당하는 339個 齒科醫院을 調査對象 醫院으로 選定하였다.

서울의 경우에는 2,867個 齒科醫院 중에서 抽出間隔을 1 / 30로 하여 區의 行政區域番號 순서로 96개의 齒科醫院을 系統抽出하였으며, 其他 地域에서는 5,625個 齒科醫院 중에서 抽出間隔을 1 / 23로 하여 市道 및 區市郡의 行政區域番號 순서로 243個 齒科醫院을 系統抽出하였다. 여기서 서울에서의 抽出間隔을 기타 地域보다 크게 한 것은 서울

〈表 5〉 標本調査對象 醫院의 選定內譯

醫院分類	醫院數	抽出間隔	標本調査對象 醫院數
內科	3,674	12	306
一般外科	1,474	10	147
産婦人科	1,710	10	171
小兒科	1,687	10	169
家庭醫學科	1,088	8	136
耳鼻咽喉科	974	8	122
整形外科	853	7	122
眼科	653	6	109
皮膚科	485	4	121
皮膚泌尿器科	41	4	10
泌尿器科	469	4	117
成形外科	362	3	121
神經精神科	244	2	122
精神科	125	2	63
神經外科	209	2	104
診斷放射線科	218	2	109
計	14,266	-	2,049

의 齒科醫院數가 많기 때문에 서울지역 保健所의 業務量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 나. 韓醫院

5,807個 韓醫院 중에서 1 / 20에 해당하는 290個 齒科醫院을 調査對象 醫院으로 選定하였다.

서울의 경우에는 1,896個 韓醫院 중에서 抽出間隔을 22로 하여 區의 行政區域番號 순서로 86個의 韓醫院을 系統抽出하였으며, 其他 地域에서는 3,911個 韓醫院 중에서 抽出間隔을 19로 하여 市道 및 區市



郡의 行政區域番號 순서로 204個 韓醫院을 系統抽出하였다.

#### 다. 保健支所

1,307個 保健支所 중에서 抽出間隔을 10으로 하여 市道 및 區市郡의 行政區域番號 순서로 131個의 保健支所를 系統抽出하였다.

#### 라. 保健診療所

2,037個 保健診療所 중에서 抽出間隔을 10으로 하여 市道 및 區市郡의 行政區域番號 순서로 204個의 保健支所를 系統抽出하였다.

#### 마. 助産所

助産所에 대하여도 患者數의 統計를 별도로 算出하여야 한다. 그런데 助産所은 176個밖에 안되며 廢業·休業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助産所의 경우에는 모두 全數調査對象으로 하였다.

### 5. 全國의 調査規模

標本抽出 對象 母集團의 33,741個 醫療機關 중에서 調査對象 醫療機關을 선정한 결과, 全國 調査規模는 全數調査對象 醫療機關 1,832個와 標本調査對象 醫療機關 3,013個를 합하여 총 4,845個 醫療機關이 되었다(1994年度 患者調査의 경우 6,840個 醫療機關).

따라서, 全數調査對象 醫療機關은 全體 醫療機關의 5.43%에 해당하며, 標本調査對象 醫療機關 全體 醫療機關의 8.93%에 해당하므로 調査對象 醫療機關은 全體 醫療機關의 14.36%가 된다. 全國의 醫療機關 種類別 調査規模는 <表 6>과 같다.

〈表 6〉 醫療機關 種類別 調査規模

機關種類	機關數	標本機關數	抽出率
綜合病院	272	272	全數
病院	467	467	全數
齒科病院	15	15	全數
韓方病院	72	72	全數
保健醫療院	16	16	全數
保健所	225	225	全數
醫院	14,855	2,638	1 / 5.6
- 全數調査層	589	589	全數
- 標本調査層	14,296	2,049	1 / 7
齒科醫院	8,492	339	1 / 25
韓醫院	5,807	290	1 / 20
保健支所	1,304	131	1 / 10
保健診療所	2,037	204	1 / 10
助産所	176	176	全數
計	33,741	4,845	1 / 7

## 6. 調査對象 醫療機關名簿

### 가. 調査對象 醫療機關名簿의 內容

調査對象 機關名簿는 區市郡 單位로 작성하였다. 調査對象 醫療機關名簿를 區市郡 單位로 작성한 것은 調査對象 醫療機關에 대한 調査票 배부, 現地調査管理, 作成完了된 調査票의 취합·검토 등과 같은 業務는 保健所 單位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保健所에서 調査管理臺帳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保健所에서는 區市郡別 調査對象 醫療機關名簿에 수록된

醫療機關에 調査票를 배부하여야 한다. 區市郡別 調査對象 醫療機關名簿에는 다음의 9개 項目을 수록하였다.

- ① 資料處理番號
- ② 標本番號
- ③ 療養取扱機關番號
- ④ 機關名
- ⑤ 代表者 姓名
- ⑥ 電話番號
- ⑦ 住所
- ⑧ 調査結果(정상, 휴진, 이진, 폐업, 휴업, 기타)
- ⑨ 患者數(외래, 퇴원, 재원 )

여기서 ①~⑦은 그 내용이 電算出力된 것이며, 保健所에서 기입하는 항목은 ⑧과 ⑨의 2개 項目이다.

나. 資料處理番號 및 標本番號

資料處理番號는 4單位의 行政區域番號(市道 2單位, 區市郡 2單位)와 3單位의 일련번호로 되어 있다. 따라서 保健所에서는 資料處理番號순서로 調査票를 편철하여야 한다. 標本番號는 3單位의 層番號와 4單位의 일련번호로 되어 있다. 층의 내역은 <表 7>과 같다.

<表 7> 醫療機關의 層番號

層番號	醫療機關	層番號	醫療機關	層番號	醫療機關
111	綜合病院	161	保健所	500	保健支所
121	病院	210	醫院(全數)	600	保健診療所
131	齒科病院	220	醫院(標本)	700	助産所
141	韓方病院	300	齒科醫院		
151	保健醫療院	400	韓醫院		

#### 다. 保健所 記入事項

保健所에서는 각 調査對象 醫療機關의 調査票 검토가 완료되면, 調査票 I(機關調査)의 患者數(외래, 퇴원, 재원)와 調査結果에 표시된 내용을 調査對象 醫療機關名簿에 그대로 이기하면 된다. 患者數의 경우에는 해당 患者數가 없으면 '0'을 記入한다.

### 7. 調査對象 機關의 有故 및 新設機關에 대한 處理

#### 가. 調査對象 機關의 有故에 대한 處理

調査對象 機關은 醫療保險管理公團의 療養取扱機關 電算과일에 수록된 1996년 6월 5일 현재의 醫療機關 중에서 抽出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調査는 1996년 10월 22, 23, 24일 중에 실시하게 되므로, 調査 당시에는 休業, 廢業, 移轉 등의 변동이 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調査에 不應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실제 調査課程에서는 이러한 變動 및 有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廢業 또는 休業의 경우

廢業 또는 休業으로 調査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有故로 處理한다.

- 調査票 I (機關調査)에 機關名, 住所, 電話番號, 療養取扱機關番號, 資料處理番號를 기입하고, 調査結果에는 廢業 또는 休業의 번호에 '○' 표시를 한다.

· 비고란에는 廢業 또는 休業 年月日을 기입한다.

- 調査票 II (外來患者)와 調査票 III(退院患者)에는 機關名과 資料處理番號만을 기입한다.

- 調査對象 機關名簿에서 調査結果의 해당 有故事項(廢業 또는 休業)에 ‘○’표시를 한다.

② 移轉의 경우

- 같은 保健所의 管轄區域안에서 移轉한 경우에는 有故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調査한다. 이때, 調査對象 醫療機關名簿에서 住所 등의 변경 내용만 수정한다.
- 다른 保健所의 管轄區域으로 移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 調査票 I (機關調査)에 機關名, 住所, 電話番號, 療養取扱番號, 資料處理番號를 기입하고, 調査結果에는 移轉의 번호에 ‘○’ 표시를 한다. 備考欄에는 移轉年月日을 기입한다.
  - 調査票 II (外來患者)와 調査票 III(退院患者)에는 醫療機關名과 資料處理番號만을 기입한다.

③ 調査不應의 경우

- 調査不應의 경우에는 최선의 努力으로 설득하여야 한다.
- 그래도 不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 調査票 I (機關調査)에 機關名, 住所, 電話番號, 療養取扱番號, 資料處理番號를 記入하고, 調査結果에는 기타 번호에 ‘○’ 표시를 한다. 備考欄에는 ‘불응’이라 기입한다.
  - 調査票 II (外來患者)와 調査票 III(退院患者)에는 機關名과 資料處理番號만을 기입한다.

④ 休診의 경우

- 1996년 10월 22, 23, 24일의 3일간 休診한 경우를 말한다.
- 調査票 I (機關調査)에는 모든 항목을 기입한다. 休診의 경우에도 調査票 II (外來患者)와 調査票 III(退院患者)을 작성한다.

## ⑤ 管轄區域 외의 醫療機關인 경우

- 調査對象 醫療機關名簿에 다른 保健所 管轄區域의 醫療機關이 수록되어 있을 때에는 調査對象 機關名簿의 資料處理番號 좌측에 'X'의 表示를 하고 機關名 우측에 해당 區市郡 保健所 이름을 기입한다. 調査結果에는 移轉으로 표시한다.
- 調査票 I (機關調査)에 機關名, 住所, 電話番號, 療養取扱機關番號, 資料處理番號를 기입하고, 調査結果에는 移轉의 번호에 '○' 표시를 한다. 備考欄에는 '타 보건소'라 기입한다.
- 해당 區市郡 保健所に 機關名, 住所, 電話番號, 療養取扱機關番號를 통보한다.
- 通報받은 保健所에서는 調査對象 醫療機關名簿의 맨 마지막에 通報 받은 내용을 모두 추가記入하고, 資料處理番號를記入한다.
  - 이 때의 資料處理番號는 그 區·市·郡의 行政區域番號를記入하고, 一連番號는 901번으로記入한다(調査對象 醫療機關名簿에 추가記入되는 醫療機關의 一連番號는 900單位의 一連番號를記入한다.)
  - 그리고 이 醫療機關에도 調査票를 配付하여 調査한다.
  - 調査票 정리단계에서 調査票 I (機關調査)의 備考欄에 “OOO 保健所 通報”라記入한다.

## 나. 新設機關에 대한 處理

新設機關이라함은 調査基準日 현재의 醫療機關으로 1996년 3월 1일 이후 開設된 醫療機關을 말한다.

保健所에서는 醫療機關名簿 또는 醫療機關 管理臺帳에서 1996년 3월 1일 이후 新設된 醫療機關만을 新設機關名簿에記入한다. 이 때에 患者 調査의 대상이 되지 않는 醫療機關(예: 藥局, 接骨院 등)은 제외한다.

新設機關名簿에는 開設日字, 種類, 機關名稱, 住所, 代表者名, 病床數, 診療科目, 對象與否 등을 記入토록 되어 있다. 新設機關名簿의 作成은 1996년 10월 20일까지 완료하며, 作成이 完了되면 다음과 같이 處理한다.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醫療機關의 對象與否欄에 'O'表示를 한다.
  - ① 綜合病院, 病院(精神病院, 結核病院, 癩病院 포함), 齒科病院, 韓方病院
  - ② 病床數가 30病床 以上인 醫院
  - ③ 醫師(專門醫 포함)가 4명 以上인 醫院
  - ④ 精神科醫院, 胸部外科醫院, 痲醉科醫院, 臨床病理科醫院, 結核科醫院, 再活醫學科醫院
- 對象與否欄에 'O'표시된 醫療機關은 新規 調査對象 機關이므로, 調査對象 機關名簿의 맨 끝에 추가 기입하고 調査票를 배부한다.
- 新規 調査對象 機關의 경우에는 資料處理番號의 區市郡番號欄에 區市郡番號를 기입하고, 一連番號는 900單位의 一連番號를 附與한다.
- 新規 調査對象 機關이 調査對象 機關 名簿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對象與否欄에 'O'表示를 하나 더 추가하고, 對象與否를 제외한 모든 내용에 줄을 그어 削除한다.

## 8. 推定方法

어떤 特性 X를 갖는 患者(또는 어떤 다른 單位)의 總數 推定値는 각 市道別로 層別 患者數를 먼저 推定한 다음, 이 層別 推定 患者數를 더하여 각 市道の 患者數 推定値를 산출한다. 그리고 각 市道の 推定 患者數를 더하여 全國의 患者數 推定値를 구한다.

### 가. 總數 推定

어떤 特性 X를 갖는 患者(또는 어떤 다른 單位)의 總數 推定値는 각 市道별로 層別 患者數를 먼저 推定한 다음, 이 層別 推定 患者數를 더하여 각 市道の 患者數 推定値를 산출한다. 그리고 각 市道の 推定 患者數를 더하여 全國의 患者數 推定値를 구한다.

$$X'_{hi} = \sum_j (N_{hij} / n_{hij}) \sum_k X_{hijk} \quad \cdots (1)$$

$$X'_h = \sum_i X'_{hi} \quad \cdots (2)$$

$$X'_i = \sum_h X'_h \quad \cdots (3)$$

$$X' = \sum_i X'_i \quad \cdots (4)$$

위의 公式에서,

$X'$  = 어떤 特性 X를 갖는 患者(또는 다른 單位)의 總數 推定値

$X$  = 特性 X를 갖는 것으로 조사된 患者數

$N$  = 全體 醫療機關數

$n$  = 調査對象 醫療機關數(全數調査對象의 경우  $N = n$ )

$h$  = 市道를 나타내는 添字

$i$  = 醫療機關 種類를 나타내는 添字

$j$  = 全數調査對象과 標本調査對象을 나타내는 添字

$k$  = 調査對象 醫療機關을 나타내는 添字

### 나. 標本誤差

患者調査의 각종 統計値는, 規模가 크거나 特殊한 醫療機關은 全數 調査로 자료를 수집하고, 其他의 경우에는 標本調査로 자료를 수집하



여 推定하는 統計値이므로, 모든 醫療機關에 대하여 全數調査를 했다고 가정할 때의 統計値와는 어느 정도의 差異가 나게 마련이다.

이 差異는 資料의 蒐集이나 資料處理 課程에서 일어나는 非標本誤差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부의 標本에 대해서만 調査하므로써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標本誤差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 差異를 精確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지 標本調査 結果로 標本誤差의 크기를 推定하여 確率的으로 說明할 수 있을 뿐이다.

標本誤差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주로 標準誤差를 사용하는데, 標準誤差가 갖는 뜻은 標本調査 結果의 統計値가 全數調査했다고 가정할 때의 全數調査 統計値와 標準誤差 이하로 差異가 나는 確率은 약 68%이며, 標準誤差의 2배 이하로 差異가 나는 確率이 약 95%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標準誤差의 크기를 相對標準誤差로도 나타내는데, 相對標準誤差는 標準誤差를 推定値로 나눈 것으로서 일반적으로는 百分率로 表示한다.

1994년 患者調査에서 어떤 特性 X를 갖는 患者(또는 어떤 다른 單位)의 總數 推定値에 대한 標本誤差는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市道別 標本誤差를 먼저 산출한 다음 全國 標本誤差를 算出한다.

$$\text{var}(X'_{hi}) = \sum_j M_{hi} \sum_k (X_{hijk} - X_{hijk+1})^2 \quad \dots (5)$$

$$M_{hi} = \frac{N_{hij} (N_{hij} - n_{hij})}{2 n_{hij} (n_{hij} - 1)}$$

$$\text{var}(X'_h) = \sum_i \text{var}(X'_{hi}) \quad \dots (6)$$

$$\mathbf{se}(X'_h) = \mathbf{var}(X'_h)^{1/2} \quad \dots (7)$$

$$\mathbf{rse}(X'_h) = \mathbf{se}(X'_h) / X'_h \times 100 \quad \dots (8)$$

$$\mathbf{var}(X') = \sum_h \mathbf{var}(X'_h) \quad \dots (9)$$

$$\mathbf{se}(X') = \mathbf{var}(X')^{1/2} \quad \dots (10)$$

$$\mathbf{rse}(X') = \mathbf{se}(X') / X' \times 100 \quad \dots (11)$$

앞의 公式에서,

var = 分散을 나타내는 記號

se = 標準誤差를 나타내는 記號

rse = 相對標準誤差를 나타내는 記號

### Ⅲ. 調査票 設計

#### 1. 考慮된 事項

調査票는 1994년의 경우와 같이 調査票 I(기관조사표), 調査票 II(외래환자조사표), 調査票 III(퇴원환자조사표)의 3가지로 나누어지며, 調査票 設計와 관련하여 고려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OECD에서 요구하는 統計 중에서 患者調査를 통하여 생산할 수 있는 保健醫療部門 從事人力, 醫療人力에 관한 항목의 補完
- ② 각종 事故에 의한 傷害의 診療에 대하여 傷害의 形態와 原因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項目을 追加
- ③ 그동안 생산하지 못했던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의 관련 統計를 생산할 수 있도록 既存 項目의 調整
- ④ 調査票 기입 및 입력의 便利性, 해당 醫療機關에서 單純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單純性, 調査票 취급의 便利性

#### 2. 改善內容

##### - 調査票 I (機關調査)

- ① 專門醫 修練病院에서만 醫師를 專門醫, 一般醫, 專攻醫로 구분하여 調査하던 것을 모든 機關으로 擴大하였다.
- ② 病醫院 소속 종사자의 경우 性別 統計를 作成할 수 있도록 性別 項目을 追加하였다.
- ③ 病醫院 從事者數에는 委託業體 所屬 從事者數(俸給은 委託業體에

- 서 받고 病醫院에서 근무하고 있는 從事者數)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委託業體 所屬 從事者數를 파악토록 관련 項目을 追加하였다.
- ④ 12개 項目으로 되어 있던 設立區分을 6개 項目으로 縮小하고 公共部門(4개 項目)과 民間部門(2개 項目)으로 區分하였다.
  - ⑤ 不必要한 項目인 開設日字를 削除하였다.

- 調査票 II (外來患者)

- ① 調査票 欄外 右側에 있는 記入要領 중에서 疾病名 記入要領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 ② 疾病名이 傷害(損傷·中毒) 또는 그 後遺症과 관련되는 경우에 傷害의 形態와 原因에 관한 統計를 作成할 수 있도록 形態番號와 原因番號의 2個 項目을 追加하였다.

- 調査票 III (退院患者)

- ① 疾病名을 3개까지 記入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2개로 縮小하였다.
- ② 主 疾病名이 傷害(損傷·中毒)와 관련된 것일 때에 傷害의 形態와 原因에 관한 統計를 作成할 수 있도록 形態番號와 原因番號의 2개 항목을 追加하였다.

## IV. 調査票 作成 要領

### 1. 一般的 注意事項

- (1) 이 조사는 의료기관 이용량과 질병통계를 파악하려는 순수 보건 통계 생산의 목적만을 가지므로, 조사표 작성시에 정확한 내용이 기입되도록 유의한다.
- (2) 조사표 작성은 청색이나 흑색 볼펜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잘못 기입되었을 때에는 적색으로 두 줄(=)을 긋고 정정한다.
- (3) 배부된 조사표가 부족한 경우에는 각 의료기관별로 조사표를 복사하여 사용한다.
- (4) 조사표는 한글로 작성하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질병분류번호의 첫단위인 영문자는 대문자로 기입한다. 그리고 조사표의 글씨는 알아보기 쉽게 쓰도록 한다.
- (5) 각 의료기관별로 완료된 조사표의 최종 점검은 반드시 기관조사표 작성자 성명란에 기입·날인한 사람이 하며, 특히 오기되었거나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이 때, 조사표 II(외래환자)와 조사표 III(퇴원환자)의 환자 일련번호가 중복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없는지 확인하여 수정한다.
- (6) 조사표는 해당 기관별로 조사표 I(기관조사), 조사표 II(외래환자) 및 조사표 III(퇴원환자)의 3가지 조사표를 모두 작성한다. 환자가 없는 경우에 조사표 II와 조사표 III에 해당 사항만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외래환자나 퇴원환자가 없다고 조사표 I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 2. 調査票 I (機關調査)

이 조사표는 1996년 10월 22, 23, 24일중 의료기관에서 적당한 날을 조사일로 택하여 그 날짜를 기입하고 조사표를 작성한다.

< 기본사항 >

조사일 : 1996년 10월 일 ( ← 기입하여 주십시오 )
-----------------------------------

- ① 機關名  
개설허가된 의료기관 명칭을 기입한다.
- ② 住所  
의료기관의 주소를 기입한다.
- ③ 電話番號  
의료기관의 대표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 ④ 醫療保險 療養取扱機關 番號
  - 의료기관의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번호를 기입한다.
  -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 지정을 신청중인 경우에는 “신청중”을, 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청”이라 기입한다.
- ⑤ 資料處理番號  
보건소의 기입 항목이므로 의료기관에서는 기입하지 않는다.
- ⑥ 標本番號  
보건복지부의 기입 항목이므로 의료기관에서는 기입하지 않는다.
- ⑦ 病醫院 所屬 従事者數
  - 정규직·임시직, 상근자·비상근자를 불문하고 병의원 소속으로 병의원 업무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인원수를 분류별로 기입한다.  
( 1 전문의, 2 일반의, 3 전공의, 4 치과의사, 5 한의사, 6 약사, 7 조산사, 8 간호사, 9 간호조무사, 10 임상병리사, 11 방사선사,

12 물리치료사, 13 작업치료사, 14 치과기공사, 15 치과위생사,  
16 의무기록사, 17 영양사, 18 기타 요원)

- 18개 분류에 대하여 성별로도 기입한다.
- 각 분류에 대하여 해당되는 종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맨 우측 단위에 '0'을 기입한다.

⑧ 委託業體 所屬 従事者數

- 봉급은 위탁업체에서 받고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를 부문별로 기입한다.  
( 1 청소, 2 세탁, 3 경비, 4 주차장관리, 5 쓰레기 처리, 6 적출물 처리, 7 기타 )
- 해당 종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맨 우측 단위에 '0'을 기입한다.

⑨ 稼動 病床數

- 허가와는 관계없이 입원환자를 위하여 실제로 가동 가능한 병상수를 기입한다.
- 응급실, 회복실, 분만실의 병상과 외래진료에 사용되는 병상은 제외한다. 따라서 입원실 병상수와 중환자실 병상수가 대상이 된다.
- 신생아병상에는 보육기(인큐베이터)도 포함된다.
- 해당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 맨 우측 단위에 '0'을 기입한다.

⑩ 患者數

- ( 外來 患者數 )
- 조사일 하루 동안의 외래환자수를 기입한다.
  - 주의사항
    - 조사표 II(외래환자)의 일련번호는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누락이나 중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마지막 일련번호가 외래환자수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련번호의 누락 또는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가 있을 때에는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조사표 Ⅱ(외래환자)에 기입된 환자수를 의무기록실, 원무과 또는 관련 부서에서 작성·보관하는 일일 외래환자 집계표와 같은 관계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 2개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면 착오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보완한다.

( 退院 患者數 )

- 1996년 9월의 1개월간 퇴원환자수를 기입한다.
- 주의사항
  - 조사표 Ⅲ(퇴원환자)의 일련번호는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누락이나 중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마지막 일련번호가 퇴원환자수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련번호의 누락 및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가 있을 때에는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조사표 Ⅲ(퇴원환자)에 기입된 환자수를 의무기록실, 원무과 또는 관련 부서에서 작성·보관하는 일일 퇴원환자 집계표와 같은 관계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 2개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면 착오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보완한다.

( 在院 患者數 )

- 1996년 10월 조사일(22, 23, 24일 중의 하루) 24:00시 현재에 입원중인 환자수를 기입한다.
- 1996년 9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하고 있는 환자는 물론 당일 입원한 환자도 모두 포함한다.
- 주의사항
  - 재원환자수는 조사일의 관계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기입한다. 참고자료로는 일일 재원환자 집계표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⑪ 設立區分

- 공공부문의 4개 항목과 민간부문의 2개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번호에 'O'표시를 한다.
  - 공공부문 : 1 국립, 2 특수법인, 3 공립, 4 기타( )
  - 민간부문 : 5 법인, 6 개인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공립”으로 분류한다.

⑫ 外來患者 調査票 枚數

조사표 II (외래환자)의 조사표 매수를 기입한다.

⑬ 退院患者 調査票 枚數

조사표 III (퇴원환자)의 조사표 매수를 기입한다.

⑭ 作成者

실제로 조사표를 작성한 사람이 자기의 직명과 성명을 기입한다.

⑮ 代表者 姓名

대표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한다.

⑯ 調査結果

-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되는 내용의 번호에 “O”표시를 한다.

1. 정상

- 정상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경우를 말한다.

2. 휴진

- 1996년 10월 22, 23, 24일의 기간에 휴진한 경우를 말한다.
- 휴진의 경우도 ①항~⑱항까지 모두 기입한다.
- 휴진의 경우 외래환자는 있을 수 없지만 9월 중의 퇴원환자는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 휴진의 경우에는 ⑱항(비고)에 휴진기간을 기입한다.

3. 이전

- 다른 보건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말한다. 다른 보

건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는 행정상 폐업으로 취급하지만 사실상의 폐업과는 다르므로 이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 이전의 경우에는 ⑱항(비고)에 이전년월일을 기입한다.
- 보건소 관할 구역 내에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이나 폐업으로 취급해서는 아니되며, 조사대상 의료기관명부의 주소, 전화번호 등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조사표를 배부한다.

#### 4. 폐업

- 조사표 배부 당시에 의료기관이 이미 폐업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1996년 9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는 진료기록부가 보건소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보관되어 있는 기록부에서 9월 중의 퇴원환자 유무를 확인하고 퇴원환자가 있을 때에는 조사표 Ⅲ (퇴원환자)에 퇴원환자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 폐업의 경우에는 ⑱항(비고)에 폐업년월일을 기입한다.

#### 5. 휴업

- 조사표 배부 당시 휴업중인 경우를 말한다.
- 휴업중인 경우에도 9월중의 퇴원환자는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 휴업의 경우 ⑱항(비고)에 휴업기간을 기입한다.

#### 6. 기타

- 불응의 경우를 말한다.
- 불응의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설득하여야 하며, 최선의 노력을 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시도 관계과로 보고한다.

- 조사결과의 어느 번호에 'O'표시가 되든지 조사표는 3가지가 모

두 있어야 한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대상 의료기관명부에 수록된 의료기관은 3가지 조사표가 모두 제출되어야 한다.

⑰ 保健所長 檢討

-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조사표의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각 의료기관의 기본사항이 모두 제대로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둘째, 각 조사표에 환자별 기입항목이 빠짐없이 제대로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셋째, 조사표 내용이 일관적인가를 확인한다. 즉, 조사표 I(기관조사)의 외래환자수는 조사표 II(외래환자)에 기입된 환자수와 일치하여야 하며, 퇴원환자수는 조사표 III(퇴원환자)에 기입된 환자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확인을 거쳐 누락이나 오기 등이 있을 때에는 재작성 또는 수정·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재작성 또는 수정·보완된 조사표의 내용을 다시 검토한다.
-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조사표의 검토가 완료되면 보건소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3. 調査票 II (外來患者)

이 조사표에는 조사일에 내원하여 진료 또는 건강진단을 받고 당일로 귀가한 외래환자 전원을 기입한다.

① 機關名

개설허가된 의료기관 명칭을 기입한다. 조사표 I(기관조사)에 기입된 기관명과 같아야 한다.

## ② 資料處理番號

보건소의 기입 항목이므로 의료기관에서는 기입하지 않는다.

## ③ 標本番號

보건복지부 기입 항목이므로 의료기관에서는 기입하지 않는다.

## ④ 一連番號

- 조사표에 외래환자를 기입하는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 일련번호에 누락이나 중복이 있게 되면 자료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조사표 작성이 완료된 후에 누락 또는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착오가 있으면 수정·보완한다.

## ⑤ 性別

남자면 “1”, 여자면 “2”를 기입한다.

## ⑥ 出生年月

출생년월을 기입한다. 출생년월을 모르는 경우에는 연령을 기입한다.

## ⑦ 患者住所

- 시도는 서울, 경기 등으로 기입하고, 구시군은 구시군을 구별할 수 있도록 ○○구, ○○시, ○○군 등으로 기입한다.
- 지역번호는 보건복지부 기입 항목이므로 의료기관에서는 기입하지 않는다.

## ⑧ 疾病分類

- 질병명과 질병분류번호를 기입한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1993)”에 따라 환자의 질병명 및 4단위 분류번호를 기입한다.
- 질병명은 의료기관에 외래방문하게 된 주된 이유가 되는 질병명이나 사유(예방접종, 검진 등)를 기입한다.
- 주의 : 질병명의 경우에 질병의 원인을 기입해서는 안된다(예 : 교통사고, 추락)

- 한방기관의 경우에는 한방에서 사용하는 분류번호가 별도로 있지만, 한방의 분류번호를 사용하지 말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1993)”에 따라 기입한다.

⑨ 傷害의 形態 및 原因

- 질병이 상해(손상/중독) 또는 그 후유증과 관련된 경우(분류번호 첫단위가 “S” 또는 “T”인 경우)에는 상해의 형태와 원인의 번호를 기입한다.

- 형태의 번호는 다음과 같다

- 01 : 사지의 골절
- 02 : 사지 이외의 골절
- 03 : 탈구, 염좌, 과긴장
- 04 : 두개내, 흉복부내 및 신경 · 척추의 손상
- 05 : 개방창
- 06 : 표재의 손상 · 좌상
- 07 : 입구를 통하여 들어간 이물의 영향
- 08 : 화상 · 열상
- 09 : 중독
- 10 : 01~09 이외의 증상
- 11 : 01~10까지의 후유증

- 원인의 번호는 다음과 같다

- 01 : 자동차 교통사고
- 02 : 기타의 교통사고
- 03 : 운동 중의 사고
- 04 : 불의의 전도 · 추락
- 05 : 기계·흉기에 의한 불의의 사고
- 06 : 농약·가스·유독동식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 07 : 자상(교의적인 경우)

08 : 타상(고의적인 경우)

09 : 01~08이외의 원인에 의한 사고

10 : 미상

⑩ 診療費 支拂方法

- 해당번호를 기입한다.

1. 전액자비

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진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의료보험 가입자라도 어떤 사유이든 진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면 전액자비에 해당된다.

2. 의료보험

공무원의료보험, 교직원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등에 가입되어 진료비의 일부만 자비로 내고 나머지는 의료보험단체에서 지불해주는 것을 말한다.

3. 산재보험

의료비 지불시 산업재해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불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의료보호

의료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국가가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부조적용자도 이에 포함시킨다.

6. 기타

1~5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다. 무료의 경우를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⑪ 診療記錄番號

진료기록부의 번호를 기입한다.

⑫ 調査票 枚數

조사표의 총매수를 확인한 후, 조사표마다 번호를 기입하되 각 장

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입한다.

· 15매인 경우 : 15매중 1매, 15매중 2매, ..., 15매중 15매

⑬ 作成者 職名

조사표 작성한 사람이 자기의 직명을 기입한다(첫째 장에만 기입한다). 여러 사람이 작성한 경우에는 각자가 작성한 첫째 장에만 기입한다.

⑭ 作成者 姓名

조사표를 작성한 사람이 자기의 직명을 기입한다(첫째 장에만 기입한다). 여러 사람이 작성한 경우에는 각자가 작성한 첫째 장에만 기입한다.

4. 調査票 Ⅲ(退院患者)

이 조사표에는 1996년 9월 1일 부터 30일 까지의  
1개월 간에 퇴원한 환자 전원을 기입한다.

<여기에서 질병이 없는 정상 신생아는 퇴원환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① 機關名

개설허가된 의료기관 명칭을 기입한다. 조사표 I (기관조사)에 기입된 기관명과 같아야 한다.

② 資料處理番號

보건소의 기입 항목이므로 의료기관에서는 기입하지 않는다.

③ 標本番號

보건복지부의 기입 항목이므로 의료기관에서는 기입하지 않는다.

④ 一連番號

- 조사표에 외래환자를 기입하는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 일련번호에 누락이나 중복이 있게 되면 자료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조사표 작성이 완료된 후에 누락 또는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착오가 있으면 수정·보완한다.

## ⑤ 性別

남자면 “1”, 여자면 “2”를 기입한다.

## ⑥ 出生年月

출생년월을 기입한다. 출생년월을 모르는 경우에만 연령을 기입한다.

## ⑦ 患者住所

- 시도는 서울, 경기 등으로 기입하고, 구시군은 구시군을 구별할 수 있도록 ○○구, ○○시, ○○군으로 기입한다.
- 지역번호는 보건복지부 기입 항목이므로 의료기관에서는 기입하지 않는다.

## ⑧ 疾病分類

- 기입항목

## (1) 주질병에 관한 사항 :

- 질병명 및 분류번호
- 상해 또는 후유증인 경우 형태(번호기입) 와 원인(번호기입)

## (2) 부질병

- 질병명 및 분류번호

- 진료기록부에 2가지 이상 질병명이 기입된 경우에는 입원의 직접 원인이 된 주된 질병에 관한 사항을 (1)에 기입하고 부질병명은 (2)에 기입한다.
- 질병명 및 4단위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1993)”에 따른다
  - 주의 : 질병명의 경우에 질병의 원인을 기입해서는 안된다(예 : 교통사고, 추락)



- 주된 질병이 상해(손상/중독) 또는 그 후유증과 관련된 경우(분류번호 첫단위가 “S” 또는 “T”인 경우)에는 상해의 형태와 원인의 번호를 기입한다.
- 형태의 번호는 다음과 같다
  - 01 : 사지의 골절
  - 02 : 사지 이외의 골절
  - 03 : 탈구, 염좌, 과긴장
  - 04 : 두개내, 흉복부내 및 신경 · 척추의 손상
  - 05 : 개방창
  - 06 : 표재의 손상 · 좌상
  - 07 : 입구를 통하여 들어간 이물의 영향
  - 08 : 화상 · 열상
  - 09 : 중독
  - 10 : 01~09 이외의 증상
  - 11 : 01~10까지의 후유증
- 원인의 번호는 다음과 같다
  - 01 : 자동차 교통사고
  - 02 : 기타의 교통사고
  - 03 : 운동 중의 사고
  - 04 : 불의의 전도 · 추락
  - 05 : 기계·흉기에 의한 불의의 사고
  - 06 : 농약·가스·유독동식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 07 : 자상(고의적인 경우)
  - 08 : 타상(고의적인 경우)
  - 09 : 01~08이외의 원인에 의한 사고
  - 10 : 미상

⑨ 入院年月日

199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1개월간 퇴원한 환자의 입원년

월일을 기입한다.

⑩ 9月 退院日字

199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 환자가 퇴원한 날짜를 기입한다.

⑪ 治療結果

해당번호를 기입한다.

1. 호전·완쾌, 2. 호전안됨, 3. 진단뿐, 4. 가망없는 퇴원, 5. 사망

⑫ 退院形態

해당번호를 기입한다.

1. 정상퇴원

의사가 퇴원하라고 해서 퇴원한 경우이다.

2. 자의퇴원

환자나 가족이 원해서 퇴원한 형태이다. 이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치료사절서약서”등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기입한다.

3. 전원

여러가지 사유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한 것이며 의뢰서 등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기입한다.

4. 탈원

정상적인 퇴원수속절차를 밟지 않고 몰래 도망간 경우등이 포함된다.

⑬ 入院經路

해당번호를 기입한다..

1. 외래

외래를 통하여 입원한 경우이다.

2. 응급실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한 경우이다.

3. 기타

외래나 응급실을 통하지 않고 다른방법으로 입원한 경우이다.

예 : (1) 미숙아 또는 질병치료를 받은 신생아의 경우(정상적인 신생아는 입원으로 보지 않는다)

(2) 장기만성병 환자가 외래나 응급실을 경유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입원했다 퇴원하는 경우

⑭ 來院經緯

해당 번호를 기입한다.

1. 직접 내원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가 없이 직접 병의원에 온 경우이다.

2. 다른 기관 의뢰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의뢰한 경우이며, 의뢰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만 포함시킨다.

⑮ 診療費 支拂方法

해당 번호를 기입한다.

1. 전액자비

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진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의료보험 가입자라도 어떤 사유이든 진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면 전액자비에 해당한다.

2. 의료보험

공무원의료보험, 교직원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직장이료보험 등에 가입되어 진료비의 일부만 자비로 내고 나머지는 의료보험단체에서 지불해주는 것을 말한다.

3. 산재보험

의료비지불시 산업재해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불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를 말한다.

## 5. 의료보호

의료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국가가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부조 적용자도 이에 포함시킨다.

## 6. 기타

1~5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다. 무료의 경우를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 ⑩ 診療記録番號

진료기록부의 번호를 기입한다.

## ⑪ 調査票 枚數

조사표의 총매수를 확인한 후, 각 조사표마다 번호를 기입하되 각 장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입한다.

· 15매인 경우 : 15매중 1매, 15매중 2매, ..., 15매중 15매

## ⑫ 作成者 職名

조사표 작성한 사람이 자기의 직명을 기입한다(첫째 장에만 기입한다). 여러 사람이 작성한 경우에는 각자가 작성한 첫째 장에만 기입한다.

## ⑬ 作成者 姓名

조사표 작성한 사람이 자기의 직명을 기입한다(첫째 장에만 기입한다). 여러 사람이 작성한 경우에는 각자가 작성한 첫째 장에만 기입한다.

## ◁ 附 錄 ▷

1. 市道別 調查規模
2. 區市郡別 行政區域番號
3. 區市郡別 調查規模
4. 調查票

附錄 1-1 : 醫療機關 種類別 調查規模 - 서울, 부산, 대구

기관종류	서울		부산		대구	
	기관수	표본수	기관수	표본수	기관수	표본수
종합병원	74	74	25	25	12	12
병원	101	101	51	51	14	14
치과병원	8	8	-	-	1	1
한방병원	22	22	4	4	15	15
보건의료원	-	-	-	-	-	-
보건소	25	25	13	13	8	8
의원	4,227	780	1,380	234	905	158
치과의원	2,867	96	734	32	530	23
한의원	1,896	86	564	30	502	27
보건지소	-	-	8	1	9	1
보건진료소	-	-	6	1	10	1
조산소	20	20	43	43	9	9
計	9,240	1,212	2,828	432	2,015	269

附錄 1-2 : 醫療機關 種類別 調查規模 - 인천, 광주, 대전

기관종류	인천		광주		대전	
	기관수	표본수	기관수	표본수	기관수	표본수
종합병원	12	12	8	8	6	6
병원	17	17	17	17	12	12
치과병원	2	2	2	2	-	-
한방병원	4	4	4	4	5	5
보건의료원	-	-	-	-	-	-
보건소	10	10	4	4	5	5
의원	701	120	517	104	555	110
치과의원	377	16	305	13	264	11
한의원	218	11	86	4	234	12
보건지소	21	2	1	-	5	1
보건진료소	30	3	16	2	8	1
조산소	4	4	14	14	3	3
계	1,396	201	974	172	1,097	166

附錄 1-3 : 醫療機關 種類別 調查規模 - 경기, 강원, 충북

기관종류	경 기		강 원		충 북	
	기관수	표본수	기관수	표본수	기관수	표본수
종합병원	29	29	17	17	10	10
병원	73	73	20	20	13	13
치과병원	-	-	-	-	-	-
한방병원	4	4	2	2	1	1
보건의료원	1	1	2	2	-	-
보건소	38	38	16	16	12	12
의원	2,412	411	375	72	413	76
치과의원	1,255	55	182	7	169	7
한의원	693	37	121	6	156	8
보건지소	130	13	94	9	96	10
보건진료소	187	18	139	14	165	17
조산소	16	16	8	8	5	5
계	4,838	695	976	173	1,040	159

附錄 1-4 : 醫療機關 種類別 調查規模 - 충남, 전북, 전남

기관종류	충 남		전 북		전 남	
	기관수	표본수	기관수	표본수	기관수	표본수
종합병원	11	11	10	10	16	16
병원	21	21	19	19	27	27
치과병원	1	1	1	1	-	-
한방병원	2	2	3	3	1	1
보건의료원	1	1	3	3	4	4
보건소	14	14	12	12	20	20
의원	485	84	635	111	498	81
치과의원	211	9	299	13	275	12
한의원	183	10	239	12	99	5
보건지소	160	16	144	14	209	21
보건진료소	243	24	260	26	345	35
조산소	6	6	4	4	13	13
계	1,338	199	1,629	228	1,507	235

附錄 1-5 : 醫療機關 種類別 調查規模 - 경북, 경남, 제주

機關種類	경 북		경 남		제 주	
	機關數	표본수	機關數	표본수	機關數	표본수
종합병원	16	16	21	21	5	5
병원	24	24	58	58	-	-
치과병원	-	-	-	-	-	-
한방병원	5	5	-	-	-	-
보건의료원	3	3	2	2	-	-
보건소	21	21	23	23	4	4
의원	607	90	985	170	160	37
치과의원	360	15	568	25	96	5
한의원	284	15	495	26	37	1
보건지소	221	22	197	20	12	1
보건진료소	330	33	252	25	46	4
조산소	4	4	25	25	2	2
계	1,875	248	2,626	395	362	59



附錄 2 : 區市郡別 行政區域番號

시도	구시군	지역코드	시도	구시군	지역코드
서울	종로구	1111	부산	북 구	2118
서울	중 구	1112	부산	해운대구	2119
서울	용산구	1113	부산	사하구	2120
서울	성동구	1114	부산	금정구	2121
서울	동대문구	1115	부산	강서구	2122
서울	성북구	1116	부산	연제구	2123
서울	도봉구	1117	부산	수영구	2124
서울	은평구	1118	부산	사상구	2125
서울	서대문	1119	부산	기장군	2151
서울	마포구	1120			
서울	강서구	1121	대구	중 구	2211
서울	구로구	1122	대구	동 구	2212
서울	영등포구	1123	대구	서 구	2213
서울	동작구	1124	대구	남 구	2214
서울	관악구	1125	대구	북 구	2215
서울	강남구	1126	대구	수성구	2216
서울	강동구	1127	대구	달서구	2217
서울	송파구	1128	대구	달성군	2251
서울	중랑구	1129			
서울	노원구	1130	인천	중 구	2311
서울	서초구	1131	인천	동 구	2312
서울	양천구	1132	인천	남 구	2313
서울	강북구	1133	인천	부평구	2314
서울	광진구	1134	인천	서 구	2316
서울	금천구	1135	인천	남동구	2317
			인천	연수구	2318
부산	중 구	2111	인천	계양구	2319
부산	서 구	2112	인천	강화군	2351
부산	동 구	2113	인천	옹진군	2352
부산	영도구	2114			
부산	부산진	2115	광주	동 구	2411
부산	동래구	2116	광주	서 구	2412
부산	남 구	2117	광주	북 구	2413

附錄 2 : 區市郡別 行政區域番號(계속)

시도	구시군	지역코드	시도	구시군	지역코드
광주	광산구	2414	경기	시흥시	3126
광주	남 구	2415	경기	남양주	3127
			경기	하남시	3128
대전	중 구	2511	경기	파주시	3196
대전	동 구	2512	경기	이천시	3197
대전	서 구	2513	경기	용인시	3198
대전	유성구	2514	경기	양주군	3151
대전	대덕구	2515	경기	여주군	3153
			경기	화성군	3155
경기	수원시-장안구	3171	경기	광주군	3159
경기	수원시-권선구	3172	경기	연천군	3160
경기	수원시-팔달구	3173	경기	포천군	3161
경기	성남시-수정구	3176	경기	가평군	3162
경기	성남시-중원구	3177	경기	양평군	3163
경기	성남시-분당구	3178	경기	안성군	3166
경기	안양시-만안구	3181	경기	김포군	3167
경기	안양시-동안구	3182			
경기	부천시-원미구	3186	강원	춘천시	3211
경기	부천시-소사구	3187	강원	원주시	3212
경기	부천시-오정구	3188	강원	강릉시	3213
경기	고양시-덕양구	3191	강원	동해시	3214
경기	고양시-일산구	3192	강원	태백시	3215
경기	의정부시	3113	강원	속초시	3216
경기	광명시	3116	강원	삼척시	3217
경기	동두천	3118	강원	홍천군	3252
경기	구리시	3119	강원	횡성군	3253
경기	평택시	3120	강원	영월군	3255
경기	안산시	3121	강원	평창군	3256
경기	과천시	3122	강원	정선군	3257
경기	오산시	3123	강원	철원군	3258
경기	군포시	3124	강원	화천군	3259
경기	의왕시	3125	강원	양구군	3260

附錄 2 : 區市郡別 行政區域番號(계속)

시도	구시군	지역코드	시도	구시군	지역코드
강원	인제군	3261	전북	전주시-완산구	3571
강원	고성군	3262	전북	전주시-덕진구	3572
강원	양양군	3263	전북	군산시	3512
			전북	익산시	3513
충북	청주시-상당구	3371	전북	정읍시	3514
충북	청주시-홍덕구	3372	전북	남원시	3515
충북	충주시	3312	전북	김제시	3516
충북	제천시	3313	전북	완주군	3551
충북	청원군	3351	전북	진안군	3552
충북	보은군	3352	전북	무주군	3553
충북	옥천군	3353	전북	장수군	3554
충북	영동군	3354	전북	임실군	3555
충북	진천군	3355	전북	순창군	3557
충북	괴산군	3356	전북	고창군	3559
충북	음성군	3357	전북	부안군	3560
충북	단양군	3360			
			전남	목포시	3611
충남	천안시	3411	전남	여수시	3612
충남	공주시	3412	전남	순천시	3613
충남	보령시	3413	전남	나주시	3614
충남	아산시	3414	전남	여천시	3615
충남	서산시	3415	전남	광양시	3617
충남	논산시	3416	전남	담양군	3652
충남	금산군	3451	전남	곡성군	3653
충남	연기군	3453	전남	구례군	3654
충남	부여군	3456	전남	여천군	3656
충남	서천군	3457	전남	고흥군	3658
충남	청양군	3459	전남	보성군	3659
충남	홍성군	3460	전남	화순군	3660
충남	예산군	3461	전남	장흥군	3661
충남	당진군	3463	전남	강진군	3662
충남	태안군	3466	전남	해남군	3663
			전남	영암군	3664

附錄 2 : 區市郡別 行政區域番號(계속)

시도	구시군	지역코드	시도	구시군	지역코드
전남	무안군	3665	경남	마산시-합포구	3871
전남	함평군	3667	경남	마산시-회원구	3872
전남	영광군	3668	경남	울산시-중구	3876
전남	장성군	3669	경남	울산시-남구	3877
전남	완도군	3670	경남	울산시-동구	3878
전남	진도군	3671	경남	울산시-울주구	3879
전남	신안군	3672	경남	진주시	3813
			경남	창원시	3814
경북	포항시-남구	3781	경남	진해시	3815
경북	포항시-북구	3782	경남	통영시	3816
경북	경주시	3712	경남	사천시	3817
경북	김천시	3713	경남	김해시	3818
경북	안동시	3714	경남	밀양시	3819
경북	구미시	3715	경남	거제시	3820
경북	영주시	3716	경남	양산시	3821
경북	영천시	3717	경남	의령군	3852
경북	문경시	3718	경남	함안군	3853
경북	상주시	3719	경남	창녕군	3854
경북	경산시	3720	경남	고성군	3862
경북	군위군	3752	경남	남해군	3864
경북	의성군	3753	경남	하동군	3865
경북	청송군	3755	경남	산청군	3866
경북	영양군	3756	경남	함양군	3867
경북	영덕군	3757	경남	거창군	3868
경북	청도군	3762	경남	합천군	3869
경북	고령군	3763			
경북	성주군	3764	제주	제주시	3911
경북	칠곡군	3765	제주	서귀포	3912
경북	예천군	3770	제주	북제주	3951
경북	봉화군	3772	제주	남제주	3952
경북	울진군	3773			
경북	울릉군	3774			

附錄 3 : 區市郡別 調查規模

시도	구시군	기관수	시도	구시군	기관수
서울	종로구	68	부산	북 구	21
서울	중 구	55	부산	해운대구	23
서울	용산구	31	부산	사하구	36
서울	성동구	28	부산	금정구	41
서울	동대문구	77	부산	강서구	1
서울	성북구	50	부산	연제구	23
서울	도봉구	28	부산	수영구	26
서울	은평구	42	부산	사상구	21
서울	서대문	31	부산	기장군	8
서울	마포구	36			
서울	강서구	46	대구	중 구	54
서울	구로구	37	대구	동 구	30
서울	영등포구	60	대구	서 구	39
서울	동작구	39	대구	남 구	21
서울	관악구	41	대구	북 구	38
서울	강남구	143	대구	수성구	37
서울	강동구	62	대구	달서구	41
서울	송파구	61	대구	달성군	9
서울	중랑구	34			
서울	노원구	44	인천	중 구	14
서울	서초구	73	인천	동 구	8
서울	양천구	37	인천	남 구	41
서울	강북구	31	인천	부평구	50
서울	광진구	37	인천	서 구	23
서울	금천구	21	인천	남동구	33
			인천	연수구	9
부산	중 구	30	인천	계양구	13
부산	서 구	18	인천	강화군	7
부산	동 구	33	인천	옹진군	3
부산	영도구	18			
부산	부산진	68	광주	동 구	55
부산	동래구	43	광주	서 구	27
부산	남 구	24	광주	북 구	42

附錄 3 : 區市郡別 調查規模(계속)

시도	구시군	기관수	시도	구시군	기관수
광주	광산구	21	경기	시흥시	15
광주	남 구	27	경기	남양주	12
			경기	하남시	6
대전	중 구	70	경기	파주시	13
대전	동 구	33	경기	이천시	17
대전	서 구	39	경기	용인시	17
대전	유성구	11	경기	양주군	8
대전	대덕구	13	경기	여주군	7
			경기	화성군	6
경기	수원시-장안구	20	경기	광주군	7
경기	수원시-권선구	27	경기	연천군	6
경기	수원시-팔달구	35	경기	포천군	12
경기	성남시-수정구	26	경기	가평군	11
경기	성남시-중원구	22	경기	양평군	8
경기	성남시-분당구	23	경기	안성군	10
경기	안양시-만안구	33	경기	김포군	9
경기	안양시-동안구	32			
경기	부천시-원미구	34	강원	춘천시	26
경기	부천시-소사구	22	강원	원주시	36
경기	부천시-오정구	13	강원	강릉시	27
경기	고양시-덕양구	28	강원	동해시	8
경기	고양시-일산구	23	강원	태백시	6
경기	의정부시	33	강원	속초시	12
경기	광명시	20	강원	삼척시	7
경기	동두천	11	강원	홍천군	6
경기	구리시	24	강원	횡성군	6
경기	평택시	29	강원	영월군	6
경기	안산시	38	강원	평창군	2
경기	과천시	5	강원	정선군	10
경기	오산시	9	강원	철원군	6
경기	군포시	19	강원	화천군	3
경기	의왕시	5	강원	양구군	2

附錄 3 : 區市郡別 調查規模(계속)

시도	구시군	기관수	시도	구시군	기관수
강원	인제군	4	전북	전주시-완산구	34
강원	고성군	4	전북	전주시-덕진구	48
강원	양양군	2	전북	군산시	26
			전북	익산시	35
충북	청주시-상당구	38	전북	정읍시	13
충북	청주시-홍덕구	31	전북	남원시	14
충북	충주시	18	전북	김제시	9
충북	제천시	13	전북	완주군	9
충북	청원군	10	전북	진안군	5
충북	보은군	5	전북	무주군	4
충북	옥천군	8	전북	장수군	5
충북	영동군	7	전북	임실군	6
충북	진천군	9	전북	순창군	4
충북	괴산군	9	전북	고창군	10
충북	음성군	5	전북	부안군	6
충북	단양군	6			
			전남	목포시	31
충남	천안시	31	전남	여수시	22
충남	공주시	19	전남	순천시	27
충남	보령시	15	전남	나주시	10
충남	아산시	17	전남	여천시	7
충남	서산시	12	전남	광양시	10
충남	논산시	26	전남	담양군	8
충남	금산군	7	전남	곡성군	4
충남	연기군	13	전남	구례군	4
충남	부여군	10	전남	여천군	6
충남	서천군	12	전남	고흥군	9
충남	청양군	4	전남	보성군	7
충남	홍성군	12	전남	화순군	8
충남	예산군	6	전남	장흥군	8
충남	당진군	12	전남	강진군	6
충남	태안군	3	전남	해남군	14
			전남	영암군	4

附錄 3 : 區市郡別 調查規模(계속)

시도	구시군	기관수	시도	구시군	기관수
전남	무안군	10	경남	마산시-합포구	31
전남	함평군	8	경남	마산시-회원구	30
전남	영광군	7	경남	울산시-중구	37
전남	장성군	7	경남	울산시-남구	32
전남	완도군	5	경남	울산시-동구	8
전남	진도군	7	경남	울산시-울주구	12
전남	신안군	6	경남	진주시	35
			경남	창원시	39
경북	포항시-남구	12	경남	진해시	14
경북	포항시-북구	23	경남	통영시	13
경북	경주시	30	경남	사천시	14
경북	김천시	14	경남	김해시	27
경북	안동시	19	경남	밀양시	14
경북	구미시	21	경남	거제시	14
경북	영주시	15	경남	양산시	9
경북	영천시	9	경남	의령군	5
경북	문경시	7	경남	합안군	6
경북	상주시	11	경남	창녕군	12
경북	경산시	16	경남	고성군	9
경북	군위군	3	경남	남해군	7
경북	의성군	11	경남	하동군	5
경북	청송군	4	경남	산청군	3
경북	영양군	3	경남	함양군	5
경북	영덕군	6	경남	거창군	8
경북	청도군	8	경남	합천군	6
경북	고령군	5			
경북	성주군	7	제주	제주시	37
경북	칠곡군	6	제주	서귀포	10
경북	예천군	8	제주	북제주	6
경북	봉화군	6	제주	남제주	6
경북	울진군	3			
경북	울릉군	1			



① 기관명	
② 주소	
③ 전화번호	④ 의료보험요양 취급기관번호

## 보건복지부 1996년 환자조사 조사표 I (기관조사)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호됩니다.

조사기관 : 보건복지부

이 조사표는 1996년 10월 22, 23, 24일중 하루를 택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단, 퇴원환자수는 1996년 9월의 1개월간입니다.)

조사일 : 1996년 10월 일 (← 기입하여 주십시오)

⑤ 자료처리번호 (보건소 기입)       -

⑥ 표본번호 (복지부 기입)       -

⑦ 병·의원 소속 종사자수(위탁업체 소속 직원 제외)  
정규직·임시직, 상근자·비상근자를 불문하고 병·의원 소속으로 병·의원 업무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인원수를 기입합니다.

종사자 분류		인원수		남 자		여 자	
의사	1. 전문의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 일반의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 전공의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4. 치과 의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5. 한 의 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6. 약 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7. 조 산 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8. 간 호 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9. 간호조무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0. 임상병리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1. 방사선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2. 물리치료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3. 작업치료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4. 치과기공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5. 치과위생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6. 의무기록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7. 영 양 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8. 기타요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합 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⑧ 위탁업체 소속 종사자수  
봉급은 위탁업체에서 받고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를 기입합니다.

업 무 구 분	인원수	
1. 청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 세탁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 경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4. 주차장관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5. 쓰레기 처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6. 적출물 처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7. 기타(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합 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⑨ 가동 병상수  
허가와는 관계없이 입원을 위하여 실제로 가동 가능한 병상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응급실, 회복실, 분만실의 병상과 외래진료실의 병상은 제외

병상종류	병 상 수	
1. 일반병상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 신생아병상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합 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보육기 포함

⑩ 환자수

환자구분	환 자 수	
1. 외래환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 퇴원환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 재원환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조사일의 1일간  
↳ '96. 9월의 1개월간  
↳ 조사일 24:00시 현재

⑪ 설립구분  
다음 중에서 해당되는 것의 번호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공공부문	1. 국립
	2. 특수법인
	3. 공립
	4. 기타( )
민간부문	5. 법인
	6. 개인

⑫ 외래환자 조사표 매수 :      ⑬ 퇴원환자 조사표 매수 :

⑭ 작 성 자      직명      성명      (인)

⑮ 대표자 성명      (직인)

< 보건소 기입 >

⑯ 조사결과      1 정상   2 휴진   3 이진   4 폐업   5 휴업   6 기타

⑰ 보건소장 검토      보건소장      (직인)

⑱ 비고 : 폐업일자, 휴업기간 및 기타 참고사항

< 확인사항 >

(1) ⑩항의 1. 외래환자수(조사일의 1일간)는 조사표 II(외래환자)에 기입된 환자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일일 외래환자 집계표 또는 관계 자료와 대조하여, 누락이나 착오사항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⑩항의 2. 퇴원환자수(1996. 9월의 1개월간)는 조사표 III(퇴원환자)에 기입된 환자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일일 퇴원환자 집계표 또는 관계자료와 대조하여 누락이나 착오사항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⑦항~⑩항의 경우에는 내용과 합계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주의 : ⑦~⑩항에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측란에 "0"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상해 형태번호

01. 사지의 골절
02. 사지 이외의 골절
03. 탈구, 염좌, 과긴장
04. 두개 내·홍복부 내 및 신경·척추의 손상
05. 개방창
06. 표재의 손상·좌상
07. 입구를 통하여 들어간 이물의 영향
08. 화상, 열상
09. 중독
10. 01~09 이외의 증상
11. 01~10 까지의 후유증

상해 원인번호

01. 자동차 교통사고
02. 기타의 교통사고
03. 운동 중의 사고
04. 불의의 전도 및 추락
05. 기계·홍기에 의한 불의의 사고
06. 농약·가스·유독 등식물에 의한 사고
07. 자상(고의적인 경우)
08. 타상(고의적인 경우)
09. 01~08 이외의 원인에 의한 사고
10. 미상

상해 형태번호

01. 사지의 골절
02. 사지 이외의 골절
03. 탈구, 염좌, 과기